2015년도 자체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연번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비고
1	신입생 학비감면 부적정	❍「△△ 표준업무처리 요령」Ⅴ. ○○ 운영지침 등 홍보, 4, 장학제도에 따르면 모집단계에서의 일률적인 학비감면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장학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기존 지침에 의거 일괄적으로 신입생 학비 감면한 사실이 있음.	
2	강의계획서 미입력	❍ 학사운영규정제2조(적용범위) 및 제67조(강의계획서) 제1항에 의거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이전에 해당교과목의 교육목표, 주별 강의계획, 참고도서 및 문헌, 평가계획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직전에 개설 된 동일 교과목의 강의개선 계획을 반영한 입력으로 전산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 △△△는 2014-○학기 "○○○"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출석관리부 관리 부적정	❍ 학사운영규정제2조(적용범위) 및 제76조(출석의무 및 관리) 제2항에 의거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시간 강의에 출석한 학생의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나, ○○○부서 교수 △△△는 2014-○학기 "○○" 교과목의 수강학생에 대한 출석관리부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번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비고
4	**공무국외 여행 결강에 따른 보강 미실시**	❍「한국교통대 학교 학사운영규정」제68조 1항에 따르면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담당 교수의 출장, 연가, 결강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은 사전에 강의시간 변경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해당 학기에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과** △△△교수는 출장기간 중 수업에 대하여 강의시간 변경원을 제출하고 보강하여야 하나 강의시간 변경원을 작성하지 않고 강의실적부 상에 강의실적으로 정리한 사실이 있음	
5	**공무국외여행 출장자 결과보고서 미제출**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제8조제1항, 「교육부 공무국외여행규정」제7조 및「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 복무 처리 요령(2014.7.11.)」'제4장 공무국외여행', '5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관리'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보고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과** △△△교수 등 ○명은 공무국외여행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기한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번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비고
6	**여비지급 부적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2015.1.23.)」에 따르면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지급하되,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다른 출장자의 자가용에 동승하여 출장한 ○○○**학과** △△△교수 외 ○명에게 운임 금00,000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2015.1.23.)」에 따르면 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2014년 교육부 여비 지급기준 변경 통보(운영지원과-2888, 2014.1.23.)]에 따르면 제1호 라목 해당자(교수, 부교수)의 1夜당 숙박비 상한액이 1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학과** △△△교수 외 ○명에게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여 금0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7	**보강 미실시**	❍ 학사운영규정 제68조(휴·결강과 강의시간 변경)에 따르면 학사일정에 없는 휴강 또는 담당교수의 출장, 연가 결근 등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은 강의시간 변경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학기에 보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장은 보강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과**에서는 강의시간 변경원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지정된 시간에 강의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번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비고
8	**소액수의 견적입찰 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 조사 미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달청장 조사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가격,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중 하나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부서에서는 '2014학년도 ○학기 기성회계 △△△ 구매' 등 총○건의 소액수의 견적입찰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별도의 가격 조사(견적서 등) 없이 물품구입요구서상의 총 합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소액수의 견적입찰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9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부적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서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연번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비고
		라고 하여 연구실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실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정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과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안전관리활동종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2015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학과에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통보하였으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에게 전결권이 부여되지 않았음	
10	**과운영비 관리에 . 관한 사항**	❍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비서실 및 과·실·팀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6인이상은 월 180천원, 5인 이하는 90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서는 기존의 부서와 회계분리함에 따라 각각 부서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국립대학 비국고 회계 관리규정(교육부)」제22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및「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기성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의 집행시에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기준 및 원칙 등을 준용하여야 하는데도, ❍ ○○○학과 등 △개 학과는 2014. 10. 1 ~ 2015. 11월까지 과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출납부 미기재, 학과장 결재 누락, 부적합 지급증거서류 부착(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등) 등으로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있음	

연번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비고
11	**물품 관리 부적정**	❍ 물품관리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보며,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취득한 물품 △△종 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등재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2	**회계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증거서류를 비치함에 있어, 승낙사항 등 증거서류의 날짜 미기재건 총△건이 발견되었음	
13	**세출예산 (수입인지 미부착) 집행에 관한 사항**	❍「인지세법」제1조 및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부서에서는 집행경비 중 작업실 구성에 사용된 물품 구입비 금00,000,000원을 집행하면서 계약서를 갈음한 승낙사항에 수입인지 2만원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번	지적건명	지 적 사 항	비고
14	**교원 외부출강 미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학사운영규정 제69조,「교육공무원 복무처리요령(2014.7.11.)」에 따르면, 교원이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학과** △△△교수는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에 출강하면서 총무과에 외부강의 신고서만 제출하고 사전에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15	**위원회 운영 소홀**	❍「○○○ 운영규정」제4조에 △△△위원회를 두고, 제5조에 의거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서는** 2015년 △△△사업 중 교체비 금000,000천원을 집행하면서 형식적 심의한 사실이 있음	
16	**외부강의 복무관리 소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받고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사전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부서** △△△은 출강함에 있어 강의요청 공문 없이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을 승인하여 외부강의가 이루어지게 한 사실이 있음	